

기금운용심의회규정

제정 2019.01.29 개정 2022.02.25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부터 제14조의6에 의거 설치한 기금운용심의회(이하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매 회계연도 「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2항」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<개정 2022.02.25.>

② 위원은 교원, 직원, 재학생, 외부 전문가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기획처장 및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이 경우 교원,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, 「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」에 의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02.25.>

- ③ 심의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-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기획처 직원으로 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.

-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5조(의결)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회의록은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

제7조(서면결의)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 할 수 있다.

제8조(관계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제반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유지 의무) 위원은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비 등의 지급)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기타사항)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